

# 사업 관리 규정

##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2장에 의거 연맹의 제반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정기간행물 (KARL지)

**제 2 조 (KARL지)** KARL지의 원고, 편집 및 인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고 마감은 10일로 한다.
2.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단, 연맹에서 지원받은 사업이나 행사의 보고 또는 관련 내용의 원고에 대하여는 지불하지 않는다.
3. 편집 및 인쇄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3 조 (광 고)** 광고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발 송)** KARL지의 발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 사무총장이 주관하여 발송한다.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맹에서 회원에게 직접 발송할 수 있다.

## 제 3 장 KARL지 광고

**제 5 조 (목 적)** 본 장은 월간지에 게재하는 광고의 게재 기준 및 그 찬조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종별 및 게재 순위)** 광고의 종별 및 그 게재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맹의 광고
2. 연맹이 후원 및 협찬하는 행사 및 사업에 관한 광고
3. 연맹 회원이 의뢰하는 광고
4. 회원 이외의 광고

**제 7 조 (거 절)** 광고의 내용이 본 연맹의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1. 연맹의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3. 특정의 개인, 단체를 비난하는 것
4. 그 외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제 8 조 (신 청)** 광고 게재의 신청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의한다.

**제 9 조 (광고찬조금)** 광고 게재 찬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맹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 광고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광고찬조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원)

게재위치	수 량	규 격	금액(VAT포함)
돌출	1	3.5 x 6Cm	600,000
표2	1	19 x 25.5Cm	700,000
표3	1	□	600,000
표4	1	□	900,000
표2대면	1	□	650,000
표3대면	1	□	550,000
화보광고	1	□	550,000
기타(내지)	1	□ (칼라)	530,000

가. 게재면수가 1면 미만일 경우 그 비율에 의한 찬조금을 적용하며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단, 최소 단위를 30,000원으로 한다.

다. 표2대이면 혹은 표3대 이면은 기타 사항(내지)을 적용한다.

3. 광고대행업자의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4. 광고 제작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제 10 조 (광고찬조금납부)** ① 광고 게재 찬조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KARL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② 광고찬조금 미납시의 게재 여부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납 광고찬조금이 있을 경우 익월부터 광고 게재를 보류한다.

**제 11 조 (할 인)** 광고주가 12개월 이상 계약하고 6개월 이상 선납 시에는 선납금에 한하여 제9조2항의 요금에서 할인을 할 수 있다, 단 할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 (신용공여)** ① 장기연속계약자 또는 이에 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주의 경우 사무총국은 계약자 또는 거래자별 신용공여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신용공여 기간은 과거의 광고찬조금 납부 실적이 양호하다고 사료되는 광고주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기간 동안은 광고찬조금의 할인은 할 수 없다.

③ 장기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할 수도 있는 1회분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 광고찬조금 발생 후 1개월 이내에(KARL지 발행 후 10일 이내) 미납분을 포함한 6개월분 이상의 광고찬조금 선납이 있는 경우는 규정 제11조에 의한 할인을 할 수 있다.

④ 신용공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금액으로는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총국의 추천에 의하여 담당 이사 및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실시하며, 과거 상당기간 동안의 거래 사실 및 납부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 4 장 홈페이지 광고

**제 13 조 (목적)** 본장은 KARL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광고의 기준 및 찬조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광고의 기준)** 광고의 기준과 종별 및 게재순위는 제6조, 제7조, 제8조와 같이 정한다.

**제 15 조 (광고 찬조금)** 광고찬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2항의 경우 연맹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 광고 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광고 찬조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배너광고 : 1년 .....600,000원(VAT포함)  
2년.....1,000,000원(VAT포함)
3. 광고 대행사 및 연맹 지정단체의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10%를 초과 할 수 없다.
4. 광고 제작비는 별도로 한다.

## 제 5 장 QSL 카드 업무

**제 16 조 (QSL 카드의 해외 발송)** QSL 카드의 해외발송 중계업무는 무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1. QSL 카드의 해외 발송은 매월 25일에 선편으로 한다.
2. 해외 발송 QSL 카드의 수집 마감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3. 상기 사항들은 사무총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7 조 (QSL 카드 국내발송)** QSL 카드의 국내발송 중계업무는 무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1. 정회원에게 중계되는 QSL 카드는 연맹 사무총국에 비치되어 있는 지역본부별 카드함에 분류 처리하고 월1회 지역본부로 송부한다.
2. 지역본부는 지부에서 QSL 중계업무를 행하는 지역에 QSL 중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6 장 행 사

**제 18 조 (행 사)** 연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① 전국 ARDF 대회
- ② 햄 페어
- ③ 기타 아마추어무선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행사

**제 19 조 (CONTEST)** ① AWARD 담당 이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개최 2개월 전 이사회에서 일지작성법, 제출기일, 심사 방법, 시상 등을 정하며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CONTEST의 종류는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7 장 강 습 회

**제 20 조 (목적)** 본장은 아마추어무선연맹 육성 방안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이하 고시라 한다) 대비 사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 조 (양성과정)** ① 고시를 위한 강습 과정은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 한다.

② 강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1. 전파법규 5시간  
전파관계 법규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 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2. 통신보안 1시간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 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무선설비취급방법 8시간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 지식 (디지털 포함),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 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교양교육 1시간

올바른 전파이용 및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한 예절 사항

5. 평가고사 1시간

통신보안 10문항과 무선설비취급방법 20문항의 평가 및 담당강사의 채점정리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1. 전파법규 3시간

전파관계 법규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 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2. 통신보안 1시간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 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 지식 (디지털 포함),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 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 22 조 (수강자의 모집)** 연맹(지역본부)은 강습회 개최 전에 KARL지 등에 공고하여 수강자를 모집한다.

**제 23 조 (관리책임자 및 강사)** ① 연맹 이사장은 강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 책임자 및 강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전담과목제로 통신보안을 포함한 2개 과목을 전담 강의토록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강의에 임해야 한다.

③ 강사는 직접 강습생의 출결사항을 확인한 후, 출석부에 정확히 기재하여 공정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실시계획)** ① 강습회의 개최 계획은 지역본부에서 7일전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강습회의 개최 계획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 시행 장소는 교육지역본부의 행정구역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수강신청접수)** ① 수강 신청의 접수는 강습회 개최 전까지 마감하며, 자격 검정을 위한 원서 접수도 동시에 실시한다.

② 수강 신청자는 연맹이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강료는 강습 시행 7일전 취소시 100%, 강습

시행 3일전 취소시 50%를 환불해준다.

③ 강습수강생중 고시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재강습을 받을 수 있다.

④ 본 연맹의 강습생중 무선설비취급방법 및 통신보안 과목의 출석율이 100% 이고 전파법규 과목 출석율이 80% 이상인 자중 자체에서 실시하는 평가 고시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에 한하여 전파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규정 제18조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연맹 이사장 수료번호를 교부한다.

⑤ 수강 신청 자격은 준회원에 한한다.

**제 26 조 (강사의 자격)** ① 강사는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아마추어국을 운영한 자 중,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 산업기사 또는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용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에서 제외 또는 철회한다.

1.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연맹에서 시행하는 강사연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
3. 아마추어무선과 관련된 영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자.
4. 강사의 임무 및 업무를 대만히 하는 자.
5. 연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 기간 종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강사연수교육을 처음으로 이수하고 3회 이상 강습회에 참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 (별지서식)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관리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7조에 의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임명을 받은 자.
2. 무자격으로 강의한 자.
3. 강사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한 자.

**제 27 조 (교 재)** 제25조에 규정된 강습회에서는 연맹에서 제작 발행한 교재 또는 시청각 교재 및 부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 28 조 (고시 및 계획 수립)** ① 연맹에서 실시하는 강습회를 수료한 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감독관이 출장하여 시행하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연간 시행하는 고시의 횟수, 수검 예상 인원, 기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한다.

③ 연맹은 고시 시행 10일 전까지 응시 원서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 29 조 (수강 및 고시의 제재)** ①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 타인의 수강을 방해하거나 태도가 지극히 불량 한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시실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공정한 고시 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다.

## 제 8 장 교 육

**제 30 조 (교양교육)** ① 교양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비는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③ 교양교육 시 강사에게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 31 조 (보 고)**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제1장 및 제2장 개정)** ① 1995. 1. 14. 제2조 제②항 개정

② 1996. 10. 8. 제2조 제①항, 제4조 제①항 개정

③ 2004. 5. 22. 제1조 개정

④ 2005. 6. 12. 제2조 ①항 개정

⑤ 2015. 2. 14. 월간지를 KARL지로 변경

⑥ 2017. 2. 11. 제2조 ②항에 단서조항 삽입

**제 2 조 (제3장 경과조치 및 개정)** ① 기 계약된 광고주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까지 기존의 계약서대로 실시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실시일 현재의 미납 광고찬조금은 실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며, 완납되지 않는 경우 광고의 게재를 중지한다. 또한 상기 기간 동안의 추가 광고 게재는 미납 광고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가 있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완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발생 광고찬조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전항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는 광고주가 미납 광고찬조금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경우 각각 10% 또는 5%의 할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의 개정 실시일 현재 미납 광고찬조금이 없으며 6개월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으며, 과거 2년간 연체 사실이 없던 광고주에 대하여는 실시일로부터 3개월 말까지 개정 전의 광고찬조금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주가 규정 제7조에 의한 장기 계약을 원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개정 실시 후 최초 6개월 말까지 추가 할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할인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이 규정은 개정 일로부터 실시한다.

⑤ 1989. 9. 22. 제9조 제②항 개정

⑥ 1991. 11. 26. 제10조 개정 제12조 추가

⑦ 1996. 2. 6. 제9조 제②항 개정

⑧ 2004. 3. 13. 광고요금을 광고찬조금으로 개정

⑨ 2005. 6. 12. 제11조 개정

⑩ 2015. 2. 15. 제9조 표에서 흑백광고 삭제

**제 3 조 (제4장 시행일 및 개정)** ① 이장은 2005. 6. 12부터 실시한다

**제 4 조 (제7장 시행일 및 개정)** ① 이 장은 1992. 1. 1. 부터 실시한다.

② 서울·경기 이외에 지역은 제반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연맹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도록 한다.

③ 1995. 1. 14. 제25조 제④항 개정

④ 1996. 10. 8. 제18조 제②항, 제25조 제④항, 제26조 제①항 개정

⑤ 1997. 10. 14. 제22조 제④항, 제23조 제①항 개정

⑥ 1998. 3. 3. 제25조 제④항 개정

⑦ 1998. 6. 11. 제23조 개정

⑧ 2001. 7. 14. 제20조, 제23조, 제26조 개정. 단 ,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임명된 자는 2003. 2. 28.까지 제23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⑨ 2002. 3. 9. 제18조 제③항 신설

⑩ 2002. 11. 9. 제23조 개정

⑪ 2003. 1. 12. 제18조, 제20조, 제22조 개정

⑫ 2003. 11. 8.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개정

⑬ 2004. 7. 10. 제18조, 제27조 개정

⑭ 2005. 12. 3 제 26조 ①항 및 ②항의 개정사항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강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행한다.

⑮ 2006. 9. 2 제 24조 및 28조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또는 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 또는 진흥원으로 개정

□ 2014. 5. 10. 제25조 ②항의 수강료 환불규정 신설

**제 5 조 (개 정)** ① 제5편은 사업관리규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 내역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운영내규 제10장 제38-40조를 제5편 제2장 월간지로 통합
  2. KARL NEWS 광고 게재 규정을 제5편 제3장 월간지 광고로 통합
  3. 사무국운영내규 제11장 제41-43조를 제5편 제4장 QSL 카드 업무로 통합
  4. 사무국운영내규 제8장 제29-35조를 제5편 제5장 행사로 통합
  5. 강습회규정 제1-12조를 제5편 제6장 강습회로 통합
  6. 교육규정 제1-4조를 제5편 제7장 교육으로 통합
  7. 1992. 10. 27. 이사회에서 확정
- ② 1995. 1. 14. 사무국을 사무총국,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개정
- ③ 1996. 10. 8. 제5장 제15조 개정
- ④ 2004. 5. 22. 제목의 편수 삭제 및 부칙조문 개정